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-27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(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)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편법 제15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3의 소포우편물에 부가하는 우편역무인 대금교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공고합니다.

2011년 5월 2일

우정사업본부장

소포우편물 대금교환 역무 변경에 관한 공고

1. 변경 사유

- 환경변화와 고객 욕구를 반영하여 소포우편물의 대금교환 역무를 개선 보완하여 이용 고객에 대한 편리성 증진

2. 변경 사항

- 한 도 액 : 건당 50만원까지
- 수 수 료 : 5만원까지 1,000원, 5만원초과부터 5만원마다 500원
- 처리방법 : 대금교환 소포우편물을 주소지에 직접 배달하고 상품대금을 수납하여 우체국에서 발송인에게 송금

※ 단, 소포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수취인이 상품대금을 직접 발송인에게 송금

3. 변 경 일 : 2011년 6월 1일